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43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6년 10월 31일

제출자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운영해 왔으나, 행정자치부에서 2013.12.11.로 현행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(대통령령)」을 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별첨 2

- 지방공무원법
-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
-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별첨 1)

다. 협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

- 입법예고(2016. 10. 14. ~ 10. 24.) 결과 : 의견 없음
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 1】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안은 조례 폐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행정7급 김산원 (02-3999-239)

【별첨 2】

관계법규

■ 지방공무원법

[시행 2016.6.30.] [법률 제13634호, 2015.12.29., 일부개정]

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, 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② "경력직공무원"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)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12.11.>

1. 일반직공무원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특정직공무원: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,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,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3. 삭제 <2012.12.11.>

③ "특수경력직공무원"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12.11.>

1. 정무직공무원
 - 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
 - 나.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2. 별정직공무원: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3. 삭제 <2012.12.11.>

4. 삭제 <2011.5.23.>

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 상한연령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1.5.23., 2012.12.11.>

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

[시행 2014.11.19.] [대통령령 제25751호, 2014.11.19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(이하 "지방별정직공무원"이라 한다)의 임용,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

[시행 2014.11.25] [행정자치부예규 제1호, 2014.11.25., 타법개정]

1. 목적

- 이 지침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용기준과 방법 및 처리절차 등 「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함)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

2.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구분

- 「지방공무원법(이하 "법"이라 함)」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- 비서관·비서, 시·도 정무부시장·부지사, 의회전문위원, 국제관계대사 등